

2021년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안)

2021. 10. 18.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

2021년도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안)

1. 예산총칙

2021년도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의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 총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2021년도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1,660,000원으로 한다.
- 제2조. 수입·지출 예산명세서는 붙임(수입·지출 예산서)과 같다.
- 제3조. 예산의 항간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며, 목간 전용은 시설장에게 위임한다.
- 제4조. 추가경정예산은 사업계획서 내에서 법인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8. 1. 7., 2012. 8. 7.>

2021년 10월 18일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

2021년도 2차 추경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원)

세 입						변경 사유
과 목			1차 추경	2차추경	증 감	
관	항	목	9,600,000	6,200,000	-3,400,000	* 세입 변경사유: - 입소자 퇴소로 인하여 입소비용 수입이 감액되어 편성하고자 함.
입소자 부담금 수입	입소 비용 수입	입소 비용 수입	9,600,000	6,200,000	-3,400,000	

(단위 : 원)

세 출						변경 사유
과 목			1차 추경	2차추경	증 감	
관	항	목	23,106,000	19,706,000	-3,400,000	* 세출 변경사유: - 비대면회의로 변경되어 회의비를 100,000원 감액하여 지출하고자 함. - 여비를 40,000원 감액 지출하고자 함. - 수용비및수수료를 152,733원 증액 지출하고자 함. - 제세공과금을 395,950원으로 감액 지출하고자 함. - 기타운영비를 278,920원 감액 지출하고자 함, - 자산취득비를 571,270원 증액 지출하고자 함. - 시설장비유지비를 158,000원 증액 지출하고자 함. - 생계비를 1,000,000원 감액 지출하고자 함 - 수용기관경비를 9,003원 감액 지출하고자 함. - 피복비를 200,000원 감액 지출하고자 함. - 의료비를 150,000원 감액 지출하고자 함. - 사회심리재활사업비를 611,410원 증액 지출하고자 함. - 예비비를 1,496,720원 감액 지출하고자 함
사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120,000	20,000	-100,000	
	운영비	여비	50,000	10,000	-40,000	
		수용비 및 수수료	3,208,467	3,361,200	152,733	
		제세공과금	810,000	414,050	-395,950	
		기타운영비	2,748,920	2,470,000	-278,92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5,970,000	6,541,270	571,270	
		시설장비유지비	700,000	858,000	158,00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3,700,000	2,700,000	-1,000,000	
		수용기관경비	119,003	110,000	-9,003	
		피복비	300,000	100,000	-200,000	
		의료비	500,000	350,000	-150,000	
사업비	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3,316,000	2,704,590	611,41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1,563,610	66,890	-1,496,720	

2021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편성 사유서

1. 2021년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 운영비를 3,400,000원을 감액하여 2차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2. 입소자 퇴소로 인하여 입소비용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3. 비대면회의로 변경되어 회의비를 100,00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4. 여비를 40,00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5. 수용비및수수료를 152,733원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6. 제세공과금을 395,95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7. 기타운영비를 278,92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8. 자산취득비를 571,270원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9. 시설장비유지비를 158,000원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10. 생계비를 1,000,00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11. 수용기관경비를 9,003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12. 피복비를 200,00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13.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를 150,00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14. 사회심리재활사업비를 611,410원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15. 예비비를 1,496,720원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